

전임교원 신규채용 세칙

(제정: 2023. 5. 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 「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4조제6항 및 「비정년계열교원 임용규정」 제3조제6항에 따라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규정,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책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장 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

제3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함)

② 전항 제5호 연구업적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2.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업적물로 한정하며, 특허 및 신안, 저서는 제외한다.
 3.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제4조(1차 연구업적 평가) ① 1차 연구업적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한다. <개정 2024.4.1.>

② 평가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내평가위원은 2명으로 하고 해당 학장으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교무처장이 제청하며, 교외평가위원은 3명으로 하고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를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24.4.1.>

③ 질적 평가는 최종학위논문을 포함한 연구업적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1.>

1. 채용분야 적합성을 50점 만점, 질적수준을 30점 만점, 전공분야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4.4.1.>
2.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질적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4.1.>

④ 양적 평가는 최종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업적물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4.4.1.>

1. 각 평가위원은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연구업적물을 따로 표기한다. <개정 2024.4.1.>
2. 교무처장은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에 따라 지원자별 업적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제1호에서 평가위원 5분의 3 이상이 관련성이 낮다고 표기한 연구업적물은 제외하며, 업적점수가 다음 각 목에 미달하는 지원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4.4.1.>

가. 인문사회·예술계열: 200% 이상

나. 이공계열: 400% 이상

(국제전문학술지(I.S.I.) 1편 이상 포함)

3. 업적점수로부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T점수를 양적 평가점수로 한다. 다만, 업적점수는 인문사회·예술계열은 최대 1,000점, 이공계열은 최대 2,000점까지 인정하며, 전체 업적평균과 표준편차는 인문사회·예술계열과 이공계열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4.4.1.>

$$\frac{\{\text{본인 업적점수}(\kappa) - \text{전체 업적평균}(\mu)\}}{\text{표준편차}(\sigma)} \times 10 + 50$$

4. <삭제 2024.4.1.>

- ⑤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질적 평가점수에 0.6의 가중치를, 양적 평가점수에 0.4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4.1.>
 - ⑥ 연구업적 평가점수 순으로 상위 5배수 이내를 1차 연구업적 평가 합격자로 한다. 다만, 동점자는 양적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4.1.>
 - ⑦ 1차 연구업적 평가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에 교무처장이 지정하는 인성검사에 응시하여야 하며,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거나 포기 의사를 밝히면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4.4.1.>
 - ⑧ 전항의 불합격자를 제외한 1차 연구업적 평가 합격자가 1명 이내이면 전형을 중단한다. <신설 2024.4.1.>
- [조명변경 2024.4.1.]

제5조(2차 발표 평가) ① 2차 발표 평가는 강의능력, 연구계획 및 학과발전계획에 대한 발표 평가로 한다. <개정 2024.4.1.>

- ②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중 1~2명과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에 4명의 위원은 해당 학장으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교무처장이 제청하되, 1차 연구업적 평가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제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1.>
- ③ 발표 평가는 공개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4.1.>
- ④ 해당 학장은 관련 학과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교무처장은 2차 발표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4배수 이내를 2차 평가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24.4.1.>
- ⑥ 2차 발표 평가 대상자가 사전에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평가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2024.4.1.>
- ⑦ 전항의 불합격자를 제외한 2차 발표 평가 대상자 또는 합격자가 1명 이내이면 전형을 중단하며, 해당 학과에서 학장을 거쳐 전형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교무처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4.4.1.>

[조명변경 2024.4.1.]

제6조(3차 면접 평가) ① 3차 면접 평가는 건학이념 구현, 교육발전 기여도, 교육자적 자질, 직장윤리, 외국어 구사 능력 등에 대한 면접 평가로 한다. <신설 2024.4.1.>

- ② 3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
- ③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

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4.1.>

④ 면접 평가는 개별 면접으로 진행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을 3차 면접 평가점수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4.4.1.>

⑤ 3차 면접 평가에 응시하지 않거나 평가점수가 75점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 <개정 2024.4.1.>

⑥ 총장은 3차 면접 평가에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24.4.1.>

제7조(임용제청 순위) ① 임용제청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평가점수는 2차 발표 평가점수에 0.4의 가중치를, 3차 면접 평가점수에 0.6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② 총장은 최종 평가점수 고득점자순에 따라 복수의 지원자를 임용제청 후보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3차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2. 2차 발표 평가점수 고득점자
3. 1차 연구업적 평가점수 고득점자

[조명변경 2024.4.1.], [본조개정 2024.4.1.]

제2장 비정년계열교원 신규채용

제8조(서류심사) ① 신규채용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호는 1차 평가 합격 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교원임용지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3. 학위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연구업적 목록(본교 소정양식) 1부
5. 연구업적물(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 등) 각 1부
6. 경력 및 재직 증명서 각 1부
7. 목사추천서 또는 세례교인 증명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1부
9.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접수증 사본 1부(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로 한정함)

② 전항 제5호 연구업적물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발표된 연구업적물로 한정한다.
2.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서 인정하는 연구업적물로 한정하며, 특허 및 신안, 저서는 제외한다.
3. 음악, 미술, 체육 등 실기 관련 특수한 분야의 경우 해당 기관의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는 교무처장이 주관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제9조(1차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 및 양적 평가) ① 1차 평가는 연구업적의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질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은 채용분야별로 학장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 교내평가위원 1명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교무처장이 추천한 교외평가위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2. 평가점수는 최종 학위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성

(70점)을 고려하여 평가위원별로 진행한다.

③ 양적 평가는 최종 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에서 인정하는 저서를 제외한 연구업적물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위원은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인원수를 결정하며, 교무처장으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평가점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하되 논문에 표시된 전체 저자 수(n)를 반영하는 대학정보공시 논문게재 실적 산정기준인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를 적용하며, 배점은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 양적 평가는 제출된 최근 5년 이내의 업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업적률{총연구업적량(%)×1/y(年數)}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여기서, y는 석사학위취득 후 年數로 최대 5년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한다.

④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최종 평가점수(이하 ‘연구업적 환산점수’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질적 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들의 평균값으로 한다.

⑤ 해당 전공분야 지원자 중 연구업적 환산점수 순으로 상위 5배수 이내를 1차 평가 합격자로 하되, 연구업적 환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환산 전 양적 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1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모집인원 대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2차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 ① 2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중 1~2명과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해당 학장으로부터 2배수 추천을 받아 교무처장이 제청한다.
- ③ 강의 및 연구능력평가는 공개 강의를 실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④ 해당 학장은 관련 학과 교원 또는 학생이 공개 강의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교무처장은 2차 평가점수에 따라 상위 3배수 이내를 2차 평가 합격자로 한다. 다만, 2차 평가에 합격한 자가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또는 해당 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전형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3차 면접 평가) ① 3차 평가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 ② 부총장, 교무처장, 선교봉사처장 및 해당 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면접 평가는 한 명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총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④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 ⑤ 총장은 3차 평가를 참관할 수 있다.

제12조(최종선발예정자의 선정) ① 최종선발 예정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강의중심교수는 2차 평가와 3차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2. 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 ② 동점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강의 및 연구능력 평가점수 고득점자(연구중심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연구실적점수 고득점자)
 2. 면접평가점수 고득점자
 3. 연령순(연소자)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4.4.1.>

[별표 2] 비정년계열교원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연구업적물 환산 배점표

양적 평가 점수			질적 평가 점수		연구업적 환산점수
인문·사회·예술계열 연평균률	이공계열 연평균률	환산점수 (A)	평가 척도	환산점수 (B)	환산점수 (A+B)
200% 이상	400% 이상	100	1. 최중학위 논문의 분야 적합성 및 질적 수준(30점) 가. 최우수: 25~30점 나. 우수: 20~24점 다. 양호: 15~29점 라. 미흡: 10~14점 2. 전공분야 경력 및 교수로서의 발전 가능 성(70점) 가. 최우수: 61~70점 나. 우수: 51~60점 다. 양호: 41~50점 라. 미흡: 30~40점	40~100점	85~200점
180% 이상 ~ 200% 미만	360% 이상 ~ 400% 미만	95			
160% 이상 ~ 180% 미만	320% 이상 ~ 360% 미만	90			
140% 이상 ~ 160% 미만	280% 이상 ~ 320% 미만	85			
120% 이상 ~ 140% 미만	240% 이상 ~ 280% 미만	80			
100% 이상 ~ 120% 미만	200% 이상 ~ 240% 미만	75			
80% 이상 ~ 100% 미만	160% 이상 ~ 200% 미만	70			
60% 이상 ~ 80% 미만	120% 이상 ~ 160% 미만	65			
40% 이상 ~ 60% 미만	80% 이상 ~ 120% 미만	60			
2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 80% 미만	55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50			
10% 미만	20% 미만	45			

※ 연평균율은 동조 제8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의 총 연구업적을 연평균 연구업적으로 적용 산출 반영한 점수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4.1.]

1차 연구업적 평가 위원 추천서

순	소속(대학)	부서(학과)	세부전공(최종학위)	직급	성명	비고
1						
2						
3						
4						
상기자를 0000학년도 0학기 신입교수 채용 00000분야의 1차 연구업적 평가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4.1.]

2차 발표 평가 위원 추천서

순	소속(대학)	부서(학과)	세부전공(최종학위)	직급	성명	비고
1						
2						
3						
4						
5						
6						
7						
8						
상기자를 0000학년도 0학기 신입교수 채용 0000분야의 2차 발표 평가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 과 장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4.1.]

강의능력, 연구계획 및 학과발전계획 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명	비고
평가내용	평점				평가의견
	A	B	C	D	
강의내용	20~18	17~14	13~10	9~7	
강의안 작성	15~14	13~11	10~8	7~6	
강의능력 및 태도	15~14	13~11	10~8	7~6	
교수의 지도력	15~14	13~11	10~8	7~6	
교수자료의 활용	20~18	17~14	13~10	9~7	
연구계획 및 전공발전계획	15~14	13~11	10~8	7~6	
총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급 :
성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면접 평가표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명	비고
평가내용	평점				평가의견
	A	B	C	D	
건학이념 구현	20~18	17~13	12~8	7~5	
교육발전 기여도	20~18	17~13	12~8	7~5	
교육자적 자질	20~18	17~13	12~8	7~5	
직장윤리	20~18	17~13	12~8	7~5	
외국어 구사 능력	20~18	17~13	12~8	7~5	
총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 급 :
성 명 :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